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8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751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사
피 고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3.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4.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3. 22.
판 결 선 고	2016. 4.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한, ㉮ 2014. 7. 16.자 재산세 40,939,640원 및 지방교육세 5,248,67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38,818,190원 및 지방교육세 4,976,690원을 초과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8

는 부분, ㉯ 2014. 9. 4.자 재산세 131,268,450원 및 지방교육세 15,443,34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124,466,260원 및 지방교육세 14,643,0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한, ㉮ 2014. 7. 7.자 재산세 600,420원 및 지방교육세 76,97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569,310원 및 지방교육세 72,990을 초과하는 부분, ㉯ 2014. 7. 7.자 재산세 8,662,320원 및 지방교육세 1,110,55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8,213,450원 및 지방교육세 1,053,010원을 초과하는 부분,㉰2014. 9. 4.자 재산세 76,026,870원 및 지방교육세 8,944,33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72,087,240원 및 지방교육세 8,480,850원을 초과하는 부분,(3) 피고[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한, ㉮ 2014. 7. 7.자 재산세 22,259,280원 및 지방교육세 2,853,75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21,105,830원 및 지방교육세 2,705,8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9. 5.자 재산세 19,179,460원 및 지방교육세 2,256,40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18,185,610원 및 지방교육세 2,139,480원을 초과하는 부분, (4) 피고 [redacted]시장이 한, ㉮ 2014. 7. 9.자 재산세 45,622,960원 및 지방교육세 5,849,09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43,258,830원 및 지방교육세 5,54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 2014. 9. 11.자 재산세 121,784,750원 및 지방교육세 14,327,61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115,474,000원 및 지방교육세 13,585,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들은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현재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규정에 따른 경감 없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8

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2, 3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2013년 귀속분에 관하여 같은 이유로 경감 없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들에 관하여,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지방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감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그 소송에서 지방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4구합8105호 판결),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같은 판결의 취지를 좇아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지방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감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각 정당한 세액(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정당한 세액과 같다[1])으로 모두 감액한 다음,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1)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시장이 감액 결정 후 원고에게 환급한 세액 중 일부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미세하게 그 액수를 달리하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비율(지방자치단체 소유 주식수 1,200,000주/발행주식 총수 11,578,744주)을 소수점 몇 자리까지 인정하여 계산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 것에 불과할 뿐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8

원고에게 각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액 감액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해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